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8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11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동 조례안에 반영하여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사전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안 제4조제2항)
- 나.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제2항)
- 다. 지역사회 공헌 기관의 위탁 우선 선정(안 제6조제4항)
- 라.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 마. 민간위탁 성과평가 의무화 및 재계약 시 평가결과 반영(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첨부

2) 입법예고 : 2020. 4. 22. ~ 2020. 5. 13.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적 부분의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지방행정과 연계된 ‘민간위탁 운영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과정의 이익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2020. 5. 29. 금천구청장이 발의하였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의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여 절차별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음.

- 민간위탁 시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안 제4조의제2항)

: 대상 사무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등 위탁 사전 적정성의 세부기준으로 서비스의 공공성, 효율성, 전문지식의 활용성, 운영의 투명성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 지방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안 제4조의3제2항)

: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하도록 함.

-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하도록 함. (안 제6조제4항)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안 제6조의2)

: 선정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성과평가 의무화 및 재계약 시 평가결과 반영(안 제15조)

(개정전) : 연1회 이상 지도점검

(개정후) : 위탁 종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 불가

○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04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참고로 우리 구는 붙임 2의 2020년 금천구 민간위탁 사업현황에 따르면 어린이집 55개소를 포함한 7개 분야, 79개 사업(428억 682만 2천원)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자 선정과정의 이의제기 절차와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민간위탁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강조하였으며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제2018-437호, 2018. 11.) 등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및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2020년 금천구 민간위탁 사업현황 1부.
3. 타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현황 1부.
4. 의견제시 사례 1부.
5. 관련법령 1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정책기획팀 배민지
연 락 처	2627 - 1076

○ **분야별 민간위탁 사업현황**

- 7개 분야, 79개 사업(42,806,822천원) 추진

(단위 : 개 / 천원)

연번	분 야	사업 수	위탁금액	비 고
1	건강	4	3,724,734	
2	교육	58	29,375,832	※ 어린이집 위탁사업 55개(24,935,474천원)
3	자치	2	1,161,870	
4	문화	3	162,864	
5	복지	9	7,513,818	
6	경제	1	250,000	
7	청년·청소년	2	617,704	

붙임3**타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현황****○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 25개 자치구 민간위탁 조례 제정

○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현황

- 전부반영 : 6개(강남, 강북, 강서, 마포, 송파, 용산)
- 미 반영 : 6개(강동, 노원, 성동, 성북, 양천, 금천)
- 일부반영 : 13개(관악, 구로, 광진, 도봉, 동대문, 동작, 서대문, 서초,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

구 분	자치구 수	비 고
의회동의안 명시	4개	관악, 광진, 서초, 중구
이의신청 절차	9개	구로, 도봉, 동대문, 동작, 영등포, 은평, 종로, 중구, 중랑
성과평가 규정	7개	관악, 광진, 도봉, 서대문, 서초, 종로, 중랑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필요한지 여부(「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관련)**

[의견15-0052, 2015. 3.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의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용산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같은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 “옥외광고물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는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조항이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의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에 관한 업무는 000에 위탁한다’ 등의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에서는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안전점검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여부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하는데 그치고,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점검 업무 위탁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안전점검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조례 제16조에서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점검 업무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8.]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69호, 2016.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기획예산과), 02-2627-107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6.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18>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6.7.18>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18>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18>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8>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④ 삭제 <2016.7.18.> [제목개정 2016.7.18.]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16.7.18.]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개정 2016.7.18>
4. 책임능력과 공신력 <신설 2016.7.18.>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6.7.18.>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6.7.18.]

제7조(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4, 2016.7.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 이하의 위촉직 위원의 수를 성별을 고려하여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1.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 민간위탁총괄 담당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7.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 해당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7.18.>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7.1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중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09.12.24.]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6.7.18.]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09.12.24.] [중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6.7.18.]
<개정 2016.7.18.>

제7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심의
4.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 [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개정 2016.7.18>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09.12.24>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신설 2009.12.24>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8. 예산지원 내용 <신설 2009.12.24>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09.12.24>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7.18.>

- ④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7.18.>] <개정 2016.7.18> [제목개정 2016.7.18.]

제10조(운영지원 등) ①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8>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6.7.18.> [제목개정 2016.7.18.]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18>

-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삭제 <2016.7.18.>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7.18>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처리상황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본조신설 2009.12.24]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신설 2016.7.18.>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신설 2016.7.1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09.12.24] <개정 2016.7.18>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18.>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09.12.24]

부칙(제597호,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69호, 2016.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